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157
------	-----

제출일자 : 1992. 1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합 계		44,660	49,163	46,670	2,493
일 반 회 계		43,308	47,717	45,323	2,394
과 목	지 방 세	7,902	8,520	8,295	225
	세 외 수 입	11,724	15,547	13,378	2,169
	조 정 교 부 금	8,749	8,749	8,749	0
	보 조 금	14,933	14,901	14,901	0
특 별 회 계		1,352	1,446	1,347	99
과 목	의 료 보 호 기 금	1,068	1,135	1,062	73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195	219	197	22
	새 마 을 소 득	89	92	88	4

나. 세출결산총괄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4,660	537	45,197	31,380	10,498	3,319
일반회계	계	43,308	537	43,845	30,094	10,498	3,253
과목	의회비	584	69	653	584	0	69
	일반행정비	7,844	35	7,879	7,156	233	490
	사회복지비	7,951	0	7,951	7,333	313	305
	산업경제비	1,226	0	1,226	902	193	131
	지역개발비	23,887	652	24,539	13,181	9,759	1,599
	문화및체육비	314	0	314	283	0	31
	민방위비	527	6	533	503	0	30
	지원및기타경비	975	△225	750	152	0	598
특별회계	계	1,352	0	1,352	1,286	0	66
과목	의료보호기금	1,068	0	1,068	1,052	0	16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5	0	195	184	0	11
	새마을소득	89	0	89	50	0	39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4. 첨부 : '91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釜山直轄市 沙下區

檢 查 意 見 書

自 1991年 1月 1日

至 1991年 12月 31日

'91年度歲入歲出豫算決算檢查委員

提出日字：1992. 6. 25

檢 查 意 見 書 本 文

檢 查 期 間：'92. 6. 4 - 6. 16

意見書作成期間：'92. 6. 17 - 6. 18

代 表 檢 查 委 員

柳 大 衡



檢 查 委 員

崔 東 式



檢 查 委 員

孫 益 相



檢 查 意 見 書

釜山直轄市 沙下區廳長 貴下

本人 등은 地方自治法 第12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釜山直轄市 沙下區廳의 1991年 自治區 歲入歲出決算書와 同 附屬書類, 會計帳簿 및 關聯 證憑書類를 檢査하였습니다.

이 檢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本人 등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7條에 열거된 事項을 檢査範圍로 하여 自治區議會의 決算檢査 등 着眼事項(1992年 6月 2日)과 會計監査基準을 遵守하였습니다.

本人 등의 檢査結果 指摘된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歲 入 分 野

I. 財政自立度 提高

1. 漸次 膨脹하는 自治財政의 원활한 需要 充當을 위하여 이에 따른 構造改善 및 制度裝置의 必要性이 絶실합니다.
2. 地方稅의 性格의 國稅는 地方稅로 移讓하고 市稅와 區稅間의 不均衡을 上級機關에 建議하여 財政自立度を 提高함이 要請됩니다.
3. '90年度 對比 自體收入의 收納率이 29.1% 伸張되었는 반면 '90年度의 自體收入이 53%에서 '91年度에 47.8%로서 自立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II. 財政充當을 위한 滯納稅 一掃

1. 未收納 要因 分析結果 未收納額 2,323,869천원 중 21%에 해당하는 490,582천원은 納稅者 怠慢事由로 未收納이 되었으며 行政的 강제징수절차이행 등으로 고질적 滯納者 일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未收納事由別 分析內譯

(단위 : 천원)

계	행	불	재	력	부	족	납	세	자	태	만	채	권	보	전	조	치
2,323,869	146,113	729,872	490,582	957,300													

2. 특히 稅外收入에서 徵收率이 低調한 辨償金, 過怠料와 過年度 세입부분에 대하여 차후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稅外收入中 未收納現況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압류액
現 年 度	쓰레기수수료	749,497	675,312	90.1	74,185	0
	변상금	535,275	111,459	20.8	423,816	0
	과태료	1,531,220	601,052	39.2	930,168	290,731
	기타잡수입	1,232,068	1,231,335	99.9	733	0
過年度		898,577	158,642	17.6	739,935	594,850

歲 出 分 野

I. 舊年度 移越事業費의 過多로 非效率的 豫算執行

1991年 一般會計歲出豫算額 43,308백만원 중에서 豫算對比 24%에 달하는 10,497백만원 事業費 豫算이 다음 年度로 移越되므로 豫算執行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II. 自治區 豫算 不用額 過多發生

過年度에도 계속 指摘되어 오고 있으나 當該 年度에도 不用額 발생액이 3,252백만원으로 前年對比 오히려 增加하였으며 특히 '91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豫算額 14백만원중 1천만원을 3次 追更에서 更正減하지 않으므로 豫算浪費를 深化시켰을 뿐 아니라 造林管理 主要事業 施設費 98백만원은 追更에서 3천만원을 增額시켰습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을 不用處理함은 豫算을 死藏시킨 結果를 招來하였 습니다.

III. 洞所管 決算 附屬書類 作成疎忽

洞所管 支出計算書의 支出累計額 3,871,055천원과 歲出決算書 支出額 3,860,702천원의 差 10,353천원은 감천1동 支出計算書 作成錯誤로 支出計算書上의 本月返納額 10,508천원을 支出額으로 作成한 것과 僻正 2동 決算附屬書類와 支出計算書의 差 155천원이며 따라서 歲出決算書 洞所管 支出累計額은 3,860,547천원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僻正2동 支出計算書와 決算書附屬書類의 不一致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지출계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差
사무관리	관서당경비	13,002	13,357	+ 355
사무관리	물품구입비	2,578	2,378	- 200
계		15,580	15,735	+ 155

IV. 非效率的인 資金計劃 樹立

毎年 1월에 1회에 걸쳐 月別, 分期別, 豫算配定 및 資金配定이 이루어지므로 能率的이고 彈力的인 資金計劃이 樹立, 運用되지 못하고 있으며 實際 運營하고 있는 資金配定 計劃書를 月別, 分期別로 調整하여 運用時期를 適時에 運用함으로써 豫算 및 資金이 死藏되지 않도록 制度를 補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指摘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釜山直轄市 沙下區의 1991年 財政運營은 收支均衡이 취해진 堅實하고 計劃的이고 장기적 觀點에서 彈力的인 財政構造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傾注되 있으며 積極的인 財政運營이었다고 認定합니다.